

공학기술종합연구소규정

(제정 1995. 4.18.)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 공학기술종합연구소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학전반을 연구하고 체계적인 산·학·연 협동체계의 구축 도모를 위하여 설치한 공학기술종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타 연구소와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과 학자 교류 추진
2. 외부로부터 위탁된 연구 및 산학협동의 중심역할 및 중소기업 지원
3. 연구발표회, 학술세미나, 강연회 개최
4. 학술연구 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5.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조직과 임원

제5조(조직)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장 : 1인
2. 간 사 : 2인 이내
3. 감 사 : 3인 이내
4. 연구요원(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조원, 연구보조원) : 약간명
5. 연구조교 : 약간명
6. 운영위원 : 학과(전공)별 1인

제6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업무를 통할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간사는 필요한 경우 연구소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연구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연구부서) ① 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연구부를 두며, 필요시 별도의 전문연구소를 둘 수 있다.

1. 컴퓨터공학 연구부
2. (삭제)

5-3-6-2 공학기술융합연구소규정

3. 기계자동차공학 연구부
4. 건축공학 연구부
5. 토목환경공학 연구부
6. 전기전자공학 연구부
7. 정보통신공학 연구부
8. (삭제)
9. 생산디자인공학 연구부
10. 나노신소재공학 연구부
11. 건축학 연구부
12. 소방안전공학 연구부

② 부장

1. 연구소의 부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2. 부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9조(전문연구소) ① 연구소에 특별한 주제 또는 연구분야를 분리시켜 유지할 객관적 필요성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각 연구부 산하에 전문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연구소는 매 학기초 정해진 일시에, 각 연구부에 소속된 정회원 5인 이상이 연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③ 각 전문연구소는 운영비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④ 전문연구소 중 “연구소 평가”를 통해 연구역량이 뛰어나며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전문연구소는 독자적 운영체계를 갖출 수 있다.

제10조(연구요원) ① 연구요원은 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조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한다.

② 연구원은 전임연구원과 비전임연구원으로 구분한다.

1.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에 상근하는 연구원을 지칭한다.

2. 비전임연구원(정회원)은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등록된 본교 전임교원을 지칭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연구소교수와 박사후 연구원(Post-Doc.)으로 구분한다.

1. 전임연구원은 박사 이상의 학위가 있어야 하며 교·내외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전임연구원 중 연구소교수는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의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3. 전임연구원은 계약제로 임명하며(연구소교수 3년, 박사후 연구원은 1년) 연구소교수는 계약기간 중의 ‘의무 연구업적량’을 충족(단, 박사후 연구원에게는 의무 연구업적량을 부여하지 않음)해야 하며 우수한 전임연구원은 연임할 수 있다.

4. 연구소교수는 계약기간 동안 외부용역 수주와 교·내외의 연구비 신청시 연구책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 연구소교수의 보수, 대우 등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6. 연구소교수는 3년 동안 SCI급 국제 학술지에 300%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7. 박사후 연구원의 보수는 유치교수 및 해당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단, 총장은 필요한 경우 박사후 연구원에게 생활관 또는 동등한 수준의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특별연구원은 연구활동 및 용역수행 등 연구소 사업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1. 특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2. 특별연구원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보수는 본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3. 특별연구원에게는 의무연구업적량을 따로 부여하지 아니한다.

⑤ 연구조원은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하고, 연구보조원은 학부과정 학생 이상으로 소장이 과제 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의 추천으로 소장이 연구기간 동안 임용한다.

제11조(연구지원인력) ① 연구소는 연구지원 인력이 필요한 경우 연구소에 상근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지원 인력은 연구소 행정이나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관리·운영하는 일반 직원과 조교 등을 지칭한다.

③ 연구소 지원인력은 소정의 인사 절차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제12조(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하며, 학술논문집과 연구소 소식지의 편집 및 제작 등 연구소 출판 활동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 편집위원은 각 부를 대표하여 1인씩 두며, 운영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3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소의 예산운용과 사업수행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과(전공)별 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간사 및 부서장들로 구성된다.

제14조(심의사항) 운영위원은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연구소 운영의 기본 계획

② 연구과제의 심의에 관한 사항

③ 예·결산에 관한 사항

④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⑤ 감사 선출

⑥ 교원 연구업적 평가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소집과 의결) ① 연구소의 전체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속 연구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연구소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 정

제16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교비, 연구간접경비, 연구소 사업에 의한 수입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② 연구소 소속 교원이 연구소를 통해 외부연구비를 수주하였을 경우, 연구비의 일정비율을 연구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연구소 논문집에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게재자에게 일정액의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예산 및 결산) ① 연구소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년도에 따르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연구소의 예산편성과 결산 및 집행은 연구소장이 행하고, 감사의 감사를 받는다.

제 5 장 감 사

제18조(감사) ① 연구소는 자체적으로 감사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연구소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정례적으로 회계년도 종료 직후 1개월 내에 해당 연구소의 예산집행, 기자재 구매, 사업진행내용 등 연구소가 1년 동안 수행한 제반 업무에 대해 조사·평가한다.

- ③ 감사는 운영위원들의 의결을 통해 소속 연구원 중에서 2인을 선정한다.

- ④ 감사 결과는 문건으로 작성하여 연구소에 공표하고 산학협력단에 통보한다. <개정 2019.9.1.>

- ⑤ 감사는 임무 완수와 동시에 그 기능이 정지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